

동화일렉트로라이트
협력사 행동규범
(Code of Conduct for Suppliers)



동화일렉트로라이트 주식회사(이하 '동화일렉트로라이트')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간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자 노력합니다. 이를 위해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 규범 및 기준,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'동화일렉트로라이트 협력사 행동규범'(이하 '본 행동규범')을 제정했습니다. 이에 동화일렉트로라이트 협력사는 모든 국제 규범 및 기준과 본 행동규범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동화일렉트로라이트 협력사는 사업장 소재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,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 받을 수 있는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 및 유지하면서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. 본 행동규범에 포함된 모든 조항은 각각 동등하게 중요하며 동화일렉트로라이트 협력사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본 행동규범과 현지법규상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높은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.

인권 및 노동

협력사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. 이는 임시 근로자, 이주 근로자, 실습생, 단기 계약 근로자,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 적용됩니다.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.

1. 자발적 취업

- 모든 근무와 직업은 자발적이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 통보를 한 후 불이익 없이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강제 노동, 착취 노동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은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됩니다. 협력사는 노동을 강제할 목적으로 폭행, 협박,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제적 상황, 채무 관계 등에 기인해 정신적 압박을 가할 수 없습니다.
-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한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.
-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, 여권 또는 노동허가증 등의 양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.

2. 아동노동 금지

- 협력사는 국제노동기구(ILO)의 제 138 호 최저연령협약 및 자국의 최저고용연령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즉 협력사는 15 세(국제노동기구(ILO) 제 138 호 최저연령협약의 예외 대상인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14 세) 미만이거나 자국 법령상 규정된 최저고용연령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18 세 미만의 근로자는 야간 근무, 초과 근무를 비롯해 안전과 보건 면에서 위험한 일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, 근로시간과 근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작업장 견습생 제도 이용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3. 차별 및 괴롭힘 금지

- 채용과 승진, 보상, 교육(연수) 기회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, 피부색, 연령, 성별, 성 정체성 및 표현, 성적 지향, 민족 또는 출신 국가, 장애 유무, 혼인 및 임신 여부, 종교, 정치적 소속, 노조 가입 여부 등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.

4. 근로시간

- 비상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포함하여 법이 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, 현지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
- 모든 시간외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.

5. 임금

-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,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임금이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적시에 제공해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6. 인도적 대우

- 모든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.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, 성적 학대, 체벌,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, 폭언 등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,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협박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.
-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정책과 징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,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.

7. 결사의 자유

- 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(노조창립 등)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며, 근로자가 차별이나 보복, 협박,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.

안전 및 보건

협력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,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, 생산의 일관성,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. 또한 지속적인 근로자 교육이 작업장 내 안전 및 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.

1. 작업환경

- 적절한 설계,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,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, 안전한 작업 절차(잠금장치, 보호장치) 구축을 통해 안전 및 보건 위해 요소(예: 화학물질,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, 화재, 차량 및 낙상 등)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

요소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해야 합니다.

-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 관련 인허가를 취득·유지하고,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안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.
- 중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활동의 경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 등이 현지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2. 비상사태 대응 방안

-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 이러한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에는 비상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, 근로자 통지 및 대피 절차 마련,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시행 등이 포함됩니다.

3. 안전 진단

- 사업장의 안전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.
-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. 또한 안전장치, 방호벽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.

4. 안전 관리체계 구축

- 사업장 내 책임자 직속의 안전 관리 전담 부서를 배치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확보해 자율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.
-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, 매뉴얼에는 즉각적 조치 사항, 대피 절차, 보고 체계, 후속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임직원에게 충분히 교육하고,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.
-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5. 안전 및 보건 커뮤니케이션

- 협력사는 기계, 전기, 화학,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해 적절한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정보와 교육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.
-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해당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
6. 보건 관리

- 협력사가 근로자에게 휴게공간, 화장실, 식당 등을 제공하는 경우,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- 협력사가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,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며 비상구, 온수, 냉난방 시설, 환기 시설, 조명, 출입통제장치가 마련된 합리적인 수준의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.

환경

협력사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. 제조공정에 있어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,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1. 유해물질

-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화학 및 기타 물질을 확실히 파악해야 하고, 해당 물질의 안전한 취급, 이동, 저장, 사용, 재활용 또는 재사용과 확실한 폐기를 보증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
2. 폐수, 고형 폐기물 및 대기오염 물질

- 설비 가동, 산업공정 및 위생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고형 폐기물,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, 연무제, 부식제, 미립분말, 오존층 파괴물질 및 공정에서 생긴 연소부산물 배출하거나 폐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어 및 처리해야 합니다.

3.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

- 생산, 유지 및 설비 공정의 변경, 원료 대체, 보존, 재료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방출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력과 연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4.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

- 생산, 제품 및 운송과 관련된 전과정평가(Life Cycle Assessment) 및 해당 평가를 뒷받침하는 환경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. 또한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요청 시 동화일렉트로라이트에 해당 전과정평가 결과 및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사업장의 전력 소비량을 모니터링하고 온실가스(GHG) 배출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.

윤리 경영

협력사는 사회적 책임을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1. 비즈니스 청렴성

- 모든 비즈니스 상호작용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부패, 강요, 공갈, 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.

2. 부당 이익 금지

-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, 제안, 허가,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. 여기에는 사업권을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 3 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, 제안, 허가, 제공 및 수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.

3. 공정 거래 준수

- 협력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4. 정보 공개

-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이를 회계장부 및 사내 시스템에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. 회사는 노동, 보건, 안전, 환경관리 실태, 사업 활동, 구조,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 및 지배적인 업계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.
- 협력사는 공급망 내에서 기록의 위조 혹은 조건이나 관행에 따른 허위 진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.

5. 신원보호와 보복금지

- 동화일렉트로라이트에 공급되는 관련 자재 공급망 내에서 위험 또는 실제 악영향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기밀 및 익명의 신고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위법 행위를 보고하거나 후속 조사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.

6. 수출 통제 및 경제적 제재 준수

-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 및 국제 무역 금수 및 제재를 준수해야 하며, 제재 위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7. 신뢰 문화 구축

- 협력사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 구성원,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혹은 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동화일렉트로라이트 공급망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

협력사는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.

1. 정책 및 시스템 수립

- 협력사는 심각한 인권 유린, 전쟁 범죄 또는 국제 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, 인도에 반하는 범죄, 대량 학살, 건강 또는 안전상의 위험, 수자원 고갈, 폐기물, 오염 등의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.
- 협력사는 관련 정책 내에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 동화일렉트로라이트로 공급하는 원자재, 부품, 제품에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(Collectively 3TG) 그리고 코발트 등이 포함될 경우(현재는 포함되지 않음),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인접국가 등 분쟁지역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무장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원 또는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.

2. OECD Guidance 에 따른 실사 수행

- 협력사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로 공급하는 원자재, 부품, 제품 내에 3TG 및 코발트가 포함되는 경우(현재는 포함되지 않음),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해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,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요청에 따라 실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요청이 있을 경우, 동화일렉트로라이트로 공급하는 원자재, 부품, 제품 내 3TG 및 코발트가 포함되는 경우(현재는 포함되지 않음), 원산지 및 제련소, 정제회사 정보를 포함한 실사 결과를 신속히 제공해야 합니다.

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

협력사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각종 기술자료, 정보 및 지적재산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사전 동의없이 제 3 자에게 누설,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

1. 대외비 정보의 관리와 보호

- 동화일렉트로라이트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, 정보 및 지적재산은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.

2. 지적재산 보호

- 동화일렉트로라이트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타인의 특허, 소프트웨어, 디자인,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.

품질경영

협력사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동화일렉트로라이트에 제공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Supply Chain 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
1. 품질관리

- 협력사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, 공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증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.

2.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

- 협력사는 설비, 재료, 작업 방법의 변경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생 시 동화일렉트로라이트에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불량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3. 협력사 상호간 품질관리

- 협력사는 자신과 거래 중인 다른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품질지원을 통해 당해 협력사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확보에 이바지해야 합니다.